

업무협약서

아래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협약 당사자

갑	기관명(상호)		대표자	
	주소		연락처	
을	기관명(상호)		대표자	
	주소		연락처	

제 1 조 (협약의 목적)

본 협약은 갑과 을이 상호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 분야)

갑과 을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: 공동 마케팅 및 판로 확대, 상품·서비스 공동 개발, 인력 및 정보 교류
협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3 조 (각 기관의 역할)

갑은 협력 분야에 필요한 유통망과 마케팅 자원을 제공하고, 을은 상품·기술 역량과 실무 인력을 제공한다.
세부 역할과 추진 일정은 별도의 실행계획서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협약 기간)

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며, 양측이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 5 조 (법적 구속력의 범위)

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상호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,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당사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.

다만 제 6 조(비밀유지)는 본 협약 자체로 당사자를 구속한다.

제 6 조 (비밀유지)

당사자는 협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,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.

제 7 조 (협약의 변경과 해지)

본 협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어느 일방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.

20 년 월 일

갑 : (서명 또는 인)

을 : (서명 또는 인)

※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권리의무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